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(정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44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정진석·홍문표·정희용

하영제 · 윤두현 · 지성호

최승재 · 김석기 · 김정재

김선교 · 추경호 · 임이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
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 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 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 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 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

- 역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3조).
- 나.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업인은 마을 단위로 임업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 사업신청서를 읍·면·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라.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산촌마을의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고 읍·면·동장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7조).
- 마.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,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관리협 약을 체결하여야 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바. 특별자치시장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 하여야 함(안 제10조).
- 사.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

가하여 징수하여야 함(안 제13조).

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임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 임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임업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임업"이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생산업을 말한다.
 - 2. "임업인"이란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)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금(이하 "임업직불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4조(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) ① 산림청장은 산촌진흥지역, 임업생산성, 정주여건, 산림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특별자치시장등"이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 ② 특별자치시장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·면·동장에게 알리고, 읍·면·동장은 해당 읍·면·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임업직불금 신청)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종합부동산세법」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 또는 임업인은 제외한다.
 - 1.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.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
 - ②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임가 단위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하며, 같은 임가의 임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
- 제6조(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촌마을의 선정절차 등) 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 로 임업직불금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 사업신청서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신청서"라 한다) 및 산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·면·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사업신청서와 산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한 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촌마을을 선정하여 읍·면·동장과 운영위

원회에 알려야 한다.

-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사업신청서 및 산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,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)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산촌마을의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(이하 "약정신청서"라 한다)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읍·면·동장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임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)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, 선정결과를 읍·면·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9조(관리협약의 체결 등)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

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 리지역 관리협약(이하 "관리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임업현황
- 2. 운영위원회의 임무
- 3.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
- 4. 임업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
- 5. 산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
- 6.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임업직불금의 지급 등)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 의 임업소득의 격차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산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인이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의 지급요

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업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의 지급요건·지급방법, 그 이행 여부 점검, 제3항에 따른 산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임업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보고) 특별자치시장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임업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
 - 2.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임업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
- 제12조(자료의 제공요청)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3조(환수 및 가산금)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업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, 이미 지급한 임업직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거짓이나 그

-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 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자치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.
- 1.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: 체납된 금액의 1 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- 2.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: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
-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 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1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직불금을 수령한 자
 - 2.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

도 거짓으로 임산물판매 또는 임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